

##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(안)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286-4 일원 시락항 어항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방치·점용 중인 폐바지·선박, 부잔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「어촌·어항법」 제46조(원상회복 등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나,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(장애물 등의 제거조치)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12. 5.

창 원 시 장



1. 공고내용 : 어항시설 무단 점·사용에 대한 원상회복(자진철거)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
2. 공고기간 : 2023.12.05. ~ 2023.12.20. (15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공고, 게시판 게시
4. 원상회복 대상 : 2건(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286-4, 시락항 일원)
5. 처리기한 : 2023.12.05. ~ 2023.12.20 (15일간)
6. 기타사항 :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상기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불법시설물을 원상회복 이행하지 않을 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「어촌·어항법」 제41조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(제거) 조치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 의 처 : 경상남도 창원시청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(☎055-225-3425)

# [원상회복 대상]

연번	1	
위치		
진전면 시락리 286-4 (시락항)		
내용		
폐선박		
소유자		
미상		
조사일시		
2023.11.21.		

연번	2
위치	진전면 시락리 286-4 (시락항)
내용	
폐선박	
소유자	
미상	
조사일시	
	2023.11.21.

